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한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37

발의연월일: 2025. 3. 10.

발 의 자:김한규·진선미·장철민

민병덕 · 강훈식 · 김태년

윤준병 • 백혜련 • 박정현

임미애 • 박희승 • 이용우

이재정 • 양부남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, 그 중 특수임무부상자를 제외한 특수임무공 로자와 가족 및 유족의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.

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,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특수임무공로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가족 및 유족은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특수임무공로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가족 및 유족이 국가의 의료기관(보훈병원을 포함)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 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하도록 함(안 제33조 등).

법률 제 호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보훈병원"을 "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"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에 지급한다"를 "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"따른"을 "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의 범위,"로 한다.

제33조의2 전단 중 "보훈병원에서의"를 "제3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의"로, "보훈병원 외"를 "제3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3조(진료) ① ~ ④ (생 략)	제33조(진료) ① ~ ④ (현행과		
	같음)		
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5		
해당하는 사람은 <u>보훈병원</u> 에서	<u>제</u> 1항에 따른		
진료한다. 이 경우 그 진료 비	의료기관		
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			
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			
하는 바에 따라 감면(減免)하			
며, 그 감면된 <u>비용은 국가보</u>	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		
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	제3항을 준용한다.		
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에			
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(이			
하 "공단"이라 한다)에 지급한			
<u>다</u> .	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		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	7		
정에 <u>따른</u> 진료 또는 진료비	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		
지원의 방법・절차・범위 및	체의 의료기관의 범위,		
상한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			
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		
제33조의2(재난상황에서의 진료)	제33조의2(재난상황에서의 진료)		
국가는 제33조제5항 각 호 외			
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			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
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
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
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
외의 의료기관에 제33조제5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, 그 감면된 비용
은 국가가 부담한다.

<u>제33조제1</u>
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의
<u>제33조제1항에 따른</u>
의료기관 외